

부 록

부록 1 .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운영세칙

[부록 1]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운영세칙

1992.6.8 훈령 제정

1999.4.15 개정

2004.7.29 개정

2005.3.17 개정

2005.12.21 개정

2008.9.10 개정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전염병예방법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10에 의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예방접종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분과위원회의 구성) ①심의위원회는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원활히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.

1. 결핵 분과위원회
2. A형/B형간염 분과위원회
3. 디프테리아-파상풍-백일해(DTaP)/폴리오 분과위원회
4. 홍역-유행성이하선염-풍진(MMR) 분과위원회
5. 일본뇌염 분과위원회
6. 인플루엔자 및 성인 분과위원회
7. 예방접종등록 분과위원회
8.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과위원회
9. 수두 분과위원회
10. Hib/폐구균 분과위원회
11. Papilloma virus 분과위원회
12. 예방접종정책 분과위원회

②분과위원회의 개설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③분과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승인 하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개최 준비 및 관련 조사활동을 수행한다.

④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분야의 주요 현안 및 과업과 관련된 조사활동, 연구, 지침 개발 또는 자문을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5인 내지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⑤심의위원 중 1인을 심의위원회 추천을 받아 질병관리본부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되 심의위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는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촉한다.

⑥분과위원은 질병관리본부장, 심의위원회, 분과위원장이 추천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촉한다.

⑦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필요시 회기 14일전 관련 심의위원회 안전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고, 관련 안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다.

⑧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⑨분과위원회 위원에게는 심의위원과 같은 의무가 주어지며, 질병관리본부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조사관련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⑩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.

제3조(회의)①심의위원회는 매년 4회 3월, 6월, 9월, 12월 첫째주 금요일에 정기 개최토록 하며 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주로 순연 한다.

②심의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개인, 학계, 시민단체, 관련계약업체 등은 위원회 개최 5일전 위원회 운영기관에 서면 신청토록 한다.

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안전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출석하여 발표토록 할 수 있으며 기타 방청인은 위원장의 승인 없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④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.

⑤심의위원회 안전 중 일반에 내용 공개가 어려운 경우 안전제목만을 공개토록 한다.

⑥위원회의 임시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,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,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4조(심의위원회 참석)①위원은 응급상황 등 특별한 사유 없이는 모든 정기위원회에 참석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. 불참 위원의 경우 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②위원은 일신상 이유나 백신제조회사와 업무 또는 재정관계 성립 및 기타 공적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자발적으로 사퇴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간사에게 특별한 사유 통보 없이 서면의견제출 포함하여 2회 연속 불참할 경우 위원 위촉해제 또는 임면 될 수 있다.

제5조 (윤리적 의무등)①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촉 당시 제약회사와 업무상 계약관계 또는 주식보유 등 개인 자산에 관한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.

②심의위원회 위원은 현재 자신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와 밀접한 안전이 있을 경우 위원회 개최 시마다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고 위원장의 직권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.

③위원이 특정 안전에 자신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의결에 참여했을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이며 무효처리 의결 수가 출석 위원 삼분의 일을 초과할 경우 위원장

은 신속히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안전의 재심의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위원의
위원 해촉 또는 임면 요청을 할 수 있다.

제6조(비밀유지등)①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전 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
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개인 또는 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고 대표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없다.

②위원이 언론 또는 대중매체로부터 인터뷰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 공보관에게 사전
통보할 것이 권장되며 위원장 또는 보건복지부 관련공무원과 함께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.

③위원이 대중 또는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준비할 경우 독점적 소유권이 있는 정보를 노출시키지
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④위원이 심의위원회 활동 또는 관련 자료의 발표 또는 출판을 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
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